(휴학)

관계규정 학칙 제48조 학사관리규정 제31조~32조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6항

정의

학적은 보유하나 학생의 신분이 정지됨

종류

일반휴학 가사사정, 질병(종합병원발행 4주이상 의사 진단서)등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군입대휴학(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재학생 입영연기자를 위한 병역이행 안내문] 군입영통 지서를 첨부하여 휴학하는 경우. 단, 일반휴학 중 군 입대하였을 경우에는 입대 후 6개월 이내에 개인별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기재) 또는 복무확인서를 각 해당학과 사무실로로 제출해야만 입대 휴학으로 처리됨.

병역복무 휴학기간: 의무복무기간 이내[군별 의무복무기간] 입대 후 귀가조치(의병, 의가사 제대 포함) 시 복학해야 함

임신. 출산. 육아휴학(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으로『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르며, 관련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업휴학(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 지침] 신청자격:

- ① 창업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 1. 2개 학기 이상 이수
- 2. 「창업교육인증제 운영 지침」 제8조에서 정하는 창업 관련 교과목 중 2과목 이상 이수
- 3. 창업휴학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한 학생(공동대표 포함). 이 경우 창업 기준일은 사업자등록증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창업휴학을 통해 창업목적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 이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창업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

절차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도교수, 학과장의 상담을 받은 후 휴학을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터넷 휴,복학 신청[정보나눔터→학사안내→휴학/복학→ 휴복학 신청하기(사이트 바로가기)]

휴학원 교부(직접 제출시) : 휴학원 [서식]

휴학원 기재 및 날인 : 본인이 기재, 본인, 보호자 및 학부(과)장 날인

휴학원 제출 : 각 해당학과 사무실에 제출

휴학허가 : 총장

제하

학사학위과정: 1회 휴학기간은 최대 4학기, 통산 8학기(병역복무는 의무복무기간 이내)

수의과대학: 재학 중 4회, 통산 6학기(1회 2학기)

의과대학: 재학 중 6회(의예과: 2회, 의학과: 4회), 통산 10학기(1회 2학기)

해당학기 수업일수 1/2선 경과와 신입생은 입학한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입대: 입영통지서

질 병 :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4주이상 의사진단서

특기

휴학 중인자가 휴학기간 만료 전에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연장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학칙 제48조의 휴학기간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해당학기 수업일수 3/4선이 경과 후 질병 또는 군 입대 휴학할 경우 - 본인의 성적인정여부 (지도교수 확인)에 따라 휴학학기를 당해 또는 다음 학기 휴학으로 인정할 수 있다.

기말시험 시작일 후 휴학하는 경우 - 당해학기는 이수한 것으로 보고, 다음 학기를 휴학한 것으로 인정한다.

재입학자의 휴학기간은 전적 휴학기간을 합산하며, 편입학자의 휴학기간은 4학기 이내로 한다.

납입금을 납부하고 휴학한자는 복학할 때 등록금이 인상되어도 차액은 납부하지 않는다. 다만, 수업 일수 2/3를 경과하여 일반휴학(질명휴학 포함)을 한 자는 납입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다.

기타

휴학, 복학 허가 철회원 [소정양식]

휴학, 복학 허가 절회 절차 : 휴학, 복학 허가 철회원 작성 \rightarrow 본인, 보호자 및 학부(과)장 날 인 \rightarrow 각 해당학과 사무실에 제출

휴학, 복학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함.

(복학)

관계규정

학칙 제46조, 제49조

학사관리규정 제33조~34조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6항

정의

휴학으로 학생의 신분이 정지된 자가 다시 학생의 신분을 갖게 됨

종류

휴학사유에 따라 일반복학과 군복학으로 구분

시기

휴학 중인자가 휴학기간 및 휴학사유가 소멸되면 복학하여야 되며, 매학기 개강일로부터 수업 일수 1/4선 이전에 복학하여야 한다 매 학기 등록기간 중에 복학함을 원칙으로 한다.

절차

인터넷 휴,복학 신청[정보나눔터→학사안내→휴학/복학→ 휴복학 신청하기(사이트 바로가기)]

복학원 교부(직접 제출시) : 복학원[서식]

복학원 날인 : 본인, 보호자 및 학부(과)장 날인

복학원 제출 : 각 해당학과 사무실에 제출

복학허가 : 총장

특기

휴학기간 경과자 및 휴학 횟수 초과자는 제적 처리한다.

병역의무를 필 한자(의병, 의가사 제대 포함)는 전역 후 해당학기에 복학해야하며, 역복학일 경우에는 일반휴학 할 수 있다.

(자퇴(퇴학)/제적)

관계규정

학칙 제50, 72, 73, 103조 학사관리규정 제43조~44조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

퇴학

학업을 스스로 그만 두고자 하는 학생이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은 자.

제적

다음에 해당되는 자로서 학생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조치 학칙 제50조 해당자 휴학기간이 지난 후 복학기간내에 이유없이 복학하지 않은 사람(미복학자) 정해진 등록기간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미등록자) 본 대학(원) 또는 타 대학(원)에 이중의 학적을 가진 사람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재학연한 내에 정해진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 학사학위과정에서 학칙 제72조 제2항, 제73조 제2항, 제103조 제3항에 해당되는 사람

절차 자퇴원 교부 : 자퇴원 [서식]

자퇴원 날인 : 본인, 보호자 날인 및 학부(과)장 날인

자퇴원 제출 : 각 해당학과 사무실에 제출

퇴학허가 : 총장

특기사항 등록금을 납부한자가 자퇴 할 경우의 등록금 반환은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등록금을 반환하오니,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함 자퇴원 처리여부는 "학적관리 - 종합정보조회"를 통하여 확인

(재입학)

관계규정

학칙 제41조

학사관리규정 제35조~37조의2

정의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다시 동일 모집단위, 동일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재입학하는 것을 말함.

재입학시기

매학기 시작 전

대상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이 다시 동일 모집단위, 동일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재입학하고자 하는 사람

제하

학칙 제102조 및 제103조 제3항에 따라 제적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재학연한을 초과하여 제적된 사람으로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학사징계 및 예과에서 유급으로 제적된 사람으로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수의학과에서 징계, 유급,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사람

절차

재입학 원서 교부(접수) 및 제출 : 제적 당시 학부(과)·전공 사무실

소속대학 교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

학사관리

재입학자는 재입학 전의 학적 변동사항이 그대로 유지되며 희망자에 한하여 제적 당시의 최종 2개 학기까지 이수학기 무효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1개 학기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재입학 연도의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유급으로 제적된 사람이 재입학한 경우 과목 재이수에 대하여는 학사관리규정 제42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른다.

학사경고로 인하여 제적된 사람은 제적 당시의 최종학기 성적은 무효로 한다.

허가통보

소속대학 -> 본인

관련부서 : 재무과, 학생과, 학사지원과, 예비군 연대

특기사항

재입학이 허가된 사람은 소정의 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고 수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유급)

관계규정

학칙 제73조

학사관리규정 제42조

종류

수의학과 및 수의예과는 학년말 성적에 의해 유급을 시킬 수 있다.

수의예과에서 3회 유급되거나, 수의학과에서 5회 유급을 받은 사람은 제적한다.

수의학과(수의예과 포함)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 유급시킨다. 수의예과 및 수의학과 각 학년 이수과목 성적 평균평점이 1.75(수의예과 1학년은 1.50)미만인 학생

전공 필수과목 중 1과목이상 F등급을 받은 학생

수의예과 수료대상자로서 수료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재이수

유급은 매 학년 말에 시행하되 유급에 따른 과목 재이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유급으로 재이수한 경우 재이수한 과목의 종전 취득성적은 무효로 한다. 학년별 이수과목 성적평균 평점이 1.75(예과, 간호학과 1학년은 1.50)미만으로 유급된 학생은 유급 사유가 발생한 학년

의 전 과정 또는 한 학기를 선택하여 그 학기의 전공필수과목을 모두 재이수 하여야 한다. 다만, 선택과목 및 교양과목은 선택하여 재이수 할 수 있다. 한 학기만 선택하여 재 이수한 경우 유급 당시 취득한 다른 학기의 성적을 합산한 평균평점이 1.75(수의예과, 간호학과 1학년은 1.50)이상일 경우 진급한다.

전공필수과목 중 1과목이상 F등급을 받은 학생은 유급사유가 발생한 학기의 성적 등급이 "C+"이하의 전공필수과목은 재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유급학년 중 유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학기의 "C+" 이하의 모든 전공과목을 재이수 할 수도 있다.(일부 과목을 선택하여 재이수 할 수 없다.)

수의예과 수료대상자로서 성적 평균평점 1.75이상을 취득한 학생이 수료소요학점 80학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여 유급한 경우는 미취득 과목만 재이수하여야 한다.

유급으로 인한 재수강시 교육과정 운영상 개설학기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해당학기에 재이수하여야 한다.

절차

유급 확정 절차 소속대학장 → 총장(학사지원과) → 학무회의 심의 → 총장

유급자 통보 총장 → 학장 → 본인(학부모)

특기사항

유급된 기간도 재학년한에 포함됨.

(전과)

관계규정

학칙 제62조

학사관리규정 제17조 ~제22조

자격

2개학기 이상 5개학기 이하 이수자 및 전체 학기 평균평점이 2.5 이상인 사람

신청시기

1월중

인원

일 반 대 학 : 모집단위별 정원의 20%이내 전입 및 10%이내 전출

해양과학대학 : 모집단위별 정원의 20%이내 전입 및 5%이내 전출

사 범 대 학 : 정원외입학, 편입학, 전과인원을 합쳐 모집단위별 정원의 10%이내 전입 및 모집단위별 정원의 10%이내 전출

제한

의과대학 수의예과,수의학과, 간호대학 간호학과, 약학대학 약학과로의 전과는 허가 하지 아니 한다.

일반학부(과)에서 사범대학으로 전과하고자 할 때에는 면접고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일반학부(과)에서 예·체능계 및 민속무용학과로 전과하고자 할 때에는 100점을 만점으로한 실기고사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함.

허가통보

총장 → 소속대학 → 본인

관련부서: 재무과, 학생과, 교육전산정보원, 예비군연대

특기사항

교직과정 이수자가 전과하는 경우 전적 학과의 교직이수를 포기하여야 함.

전과한 자의 등록금 처리는 전과한 학부(과)의 해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납부한 등록 금과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차액금을 추징 또는 환불 처리한다.